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3-27

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

제 1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	2021가합6020 양수금
원 고	A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○○
	담당변호사 ○○○
피 고	○○시
	소송대리인 변호사 ○○○
	소송복대리인 변호사 ○○○, ○○○
변 론 종 결	2023. 2. 23.
판 결 선 고	2023. 3. 16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800,804,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6. 9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3-27

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주식회사 B(이하 'B'라 한다)는 피고에게 취득세를 과·오납한 회사이고, 원고는 변호사로서 B를 대리하여 피고에 대해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한 사람이다.

나. 원고는 2021. 5.경 B의 피고에 대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사건을 대리하기로 하면서 B로부터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 반환받게 될 지방세환급금 채권(이하 '이 사건 환급금 채권'이라 한다)을 B로부터 양수하기로 하였다. 그에 따라 원고는 B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등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'B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을 양도하였다'는 내용의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며, 위 경정청구서 등은 2021. 5. 18. 피고에게 도달하였다.

다. 피고는 2021. 6. 3. B에게 "817,234,290원(= 취득세 773,059,460원 + 지방교육세 44,174,830원)이 과·오납 되었으므로, 이미 신고한 취득세를 경정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."라는 내용의 경정청구 결과 통지를 하였다.

라. 피고는 2021. 6. 18. B에게 "환급금 817,798,910원(= 과·오납금 817,234,290원 + 환급가산금 564,620원)(이하 '이 사건 환급금'이라 한다)에서 충당액(추심금액) 800,804,39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16,994,520원을 지급한다."라는 내용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를 하였다.

마. 피고가 이 사건 환급금에서 충당한 800,804,390원 중 78,638,050원은 B가 피고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3-27

에 체납한 지방세이고, 722,135,900원은 B가 국가에 체납한 국세이며(◯◯세무서는 2021. 6. 9. B에 대한 위 국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을 압류하였고,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), 30,440원은 B의 피고에 대한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이다.

[인정 근거]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 주장의 요지

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을 양수한 다음 2021. 5. 18. 피고에게 확정일자부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, 피고는 2021. 6. 3. 원고에게 817,234,290원이 과·오납되었다고 통지하였으므로, 위 시점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. 따라서 피고가 2021. 6. 18. 이 사건 환급금에서 B에 대한 국세 등 체납액을 공제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.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,804,390원(= 이 사건 환급금 817,798,910원 - 기지급금 16,994,520원)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,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,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,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(대법원 2002. 12. 6.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).

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3-27

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원고와 B 사이의 채권양수도계약은 B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탁법 제6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,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의 제기는 그 실질이 B의 소송신탁에 따라 이루어진 이른바 임의적 소송담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바,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.

① 원고는 변호사로서 B를 대리하여 피고에 대해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, 위 경정청구 사건의 결과에 따라 B가 피고로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지급받게 되면 그 환급금에서 성과보수를 지급받으면 충분하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 채권 전부를 양도받았다.

②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을 양수할 무렵인 2021. 5. 14. B와 사건 위임계약(갑 제5호증)을 체결하였다. 그 내용은 B가 원고에게 지방세환급절차, 지방세법상의 불복절차, 조세소송절차에 있어서 사건처리를 위임한다는 것이고, 판결 등으로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원고가 지방세환급액의 37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보수로 받으며 성과보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B에게 돌려주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. 원고는 채권양도 및 사건위임계약 체결 후 5개월 남짓 경과한 시점에 이 법원에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 이 사건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.

③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을 양도받지 않았다면 B는 그 채권자인 대한민국 등의 이 사건 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. 그런데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확정일자부 채권양도 통지를 함으로써 위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이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3-27

사건 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. 이처럼 원고와 B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소송행위를 통해 이 사건 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, 그렇지 않다면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을 전부 양수받아 직접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.

④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도 C으로부터 지방세환급금 채권을 양도받아 2021. 2.경 ○○시를 상대로 이 법원에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 위 사건에서 "C의 ○○시에 대한 확정일자부 지방세환급금 채권양도 통지가 C에 대한 압류채권자인 ○○○○시 등의 지방세환급금 채권 압류보다 먼저 있었다."는 등의 이유로 "대전광역시 등의 채권압류(C이 ○○시에 대하여 가지는 지방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압류)가 효력이 없다."는 판단을 받아 ○○시로부터 위 지방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[이 법원 2021. 10. 14. 선고 2021가합5157 판결(확정)]. 이와 같은 종전 소송의 내용과 경과, 종전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의 유사성,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B 사이의 채권양도 및 사건위임계약 체결의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, 원고와 B는 소송행위를 통해 이 사건 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권자의 채권압류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, 이를 통해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을 지급받을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.

4. 결론

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○○○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3-27

판사 ○○○

판사 ○○○